

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위탁기간이 2024.12.25. 만료 예정에 따라,

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관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가정 밖 청소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및 시설 규모

구분	동·호수	전용면적	비 고
대원리츠빌 (시루봉로15길 93)	2동 203호	63.77㎡	사무실
	1동 103호	60.05㎡	여자 생활관
	1동 201호	60.03㎡	
	1동 302호	59.98㎡	
해날하이빌 (도봉로133길 8-18)	301호	57.42㎡	남자 생활관
	302호	50.63㎡	
삼성아트빌 (도당로 17길 54)	301호	44.32㎡	
	302호	44.32㎡	

- 이용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4. 12. 26. ~ 2027. 12. 25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11백만원('24년)
 - 인건비 336백만원, 운영비 33백만원, 사업비 14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(☎ 2133-4133)